

지나사변에 즈음하여 방인의 도지 제한과 단속 관계 잡건 제1권

내무성발경(內務省發警) 제5호

1938년 2월 23일

내무성 경보국장

각청부현장관 앞

(동경부 지사 제외)

지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최근 지나[支那, 중국의 차별어] 각지의 질서가 회복됨에 따라 도항하려는 사람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현지의 요리점, 음식점, 카페, 또는 가시자시킴[貸座敷, 유곽과 같은 업태]와 유사한 업소 영업자와 연계하여 이들 영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한 부녀가 적지 않다. 게다가 또 내지(內地)에서 이들 부녀를 모집·추선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군 당국의 양해를 얻은 듯이 제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최근 각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녀 도항은 현지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필요하고 부득이한 일이다. 경찰 당국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이들 부녀의 모집·추선 등에 대해 적정하게 단속하지 못하면 제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황군[皇軍, 일본군]의 명예를 손상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방 국민, 특히 출정 병사 유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부녀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 없기를 보증하기 어려워서 이런저런 현지의 실정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후 이들의 취급에 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준거하기 바라며 명에 따라 통첩합니다.

1. 취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 도항은 현재 내지에서 창기와 그밖에 사실상 취업에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에 화류병(花柳病)이나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부녀로 북지(北支)와 중지(中支) 방면으로 향하는 것에 한하여 당분간 묵인하는 것으로 하고, 1937년 8월 미삼기밀합(米三機密合) 제3776호 외무차관의 통첩에 따라서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것
2. 전항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영업의 가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속히 귀국하도록 미리 알려줄 것
3. 취업을 목적으로 도항하려는 부녀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것
4.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가 도항을 위해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반

드시 동일 호적 내에서 가장 가까운 존속친(尊屬親)을, 존속친이 없을 경우에는 호주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만약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

5.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하려는 부녀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영업 계약, 그 밖에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부녀 매매, 약취유괴(略取誘拐) 등의 사실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
6.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 그 밖에 일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의 모집, 주선 등을 할 때 군의 양해를 얻었거나 군과 연락이 있었다는 식의 언사를 하거나 그 밖에 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언사를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은 모두 엄중히 단속할 것
7. 전항의 목적으로 도항할 부녀를 모집·주선 등을 할 때,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혹은 과장해서 전하는 것과 같은 일은 모두 엄중히 단속할 것. 또한 모집과 주선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하여 정식 허가나 재외공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신원이 불확실한 자에게는 도항을 인가하지 말 것